

2

5 <1993.12.31>

5 2 <1991.12.31>

6 <2006.1.12>

6 2() 「 」 35 3, 「 」 44 , 「 」 43 , 「 」 43
4.1 (「 」 31
4.8) . . . ,

. < 2011.1.10>

1 . . . 10 가 .
4

[2008.12.31]

6 3 <1992.12.31>

7 () 1 7 2
. . . , . . . , . . .
「 」 6 7 3

. < 2009.3.31>

1.1 1 1
7 1 12 31 1 (가)

2.7 7 1
1 1 6 30 1 (가)

1 1 () ,
(
, 「 」 15 1 . 4 . 5 6
「 」 12 1 5
) ,

15

1

15

.< 2010.1.7 >

()

$$= 1 \times 6()$$

1

2

가

(3 . 18 5 2) . . . 4

가 .< 2009.3.31 >

1

3

1

,

「 가 」 22

2

(,

)

(

.

10

)

,

「 가 」 14 1 1 . 2

「 가 」 13 1 1 . 2

(「 가 」 15

「

」 14

)

[2008.12.31]

7

2()

2 2

,

2 3

2 3

(" ")

1.

2.

3.

4.

(竝用)

5.

2 1

2 4

2 2 5

3

2

()

7 가

2 6

3

[[2008.12.31](#)]

8 <[2001.1.4](#)>

9 <[2001.1.4](#)>

3 가

10 (가) 가 5 가

, 가 4 가 가 4 가

, 7 1 가

1 가 가

(가

1 3) 가 (1 , 2

, 3)

가 .< [2010.7.26](#)>

1.

2. 60 (55) (가

) 60

3. 20 ()

20 가

4. 가 가 가

20

2 2 4 " 가 "

가

.< 2010.1.7>

[2008.12.31]

11 () () .
 가 1 2 (3), 2 5 ,
 3 8 , 4 11 ()
 15) 1 6 . , 가
 가 가 7 1
 .
 1 " . " 「 . 」 2 .
 . (가
 , " ") 「 」 31 「 .
 」 2 , " "

.< 2010.7.26>

(가)
 가 ()
 가 가 가 가)
 () , . . .
 . 가 .
 3 , 가
 ,
 15 1 , 15
 가
 .
 . . . 4

.< 2009.3.31>

10 4 . 5 . 10 11 .< 2010.1.7>

[2008.12.31]

11 2() (. 3
 3 . , 「 」 6
) 6 2 . ,
 가

4

.< 2009.3.31 >

[2008.12.31]

11 3() 「 가 」 71 2 4 30

40

1

1. : 100

2. : 50

1

1

2

15

50

50

1

2

15

(3

1

2

50

)

6

1

[2011.1.10]

4

12 ()

7

(

)

.< 2009.3.31 >

1

1

10

가

1

7 2

(" . ")

5

가

[2008.12.31]

5 < 2005.2.25 >

13 ()

8

9

10

10 2

10

[2008.12.31]

14 ()

11

(11 2 가 3)

[2008.12.31]

14 2() 「

」 57 4 1 , 「

」 30 3 1 , 「

」 53 2 1 「

」 38 2 1

가

5

3

. < 2010.1.7 >

[2008.12.31]

14 3()

40

[2008.12.31]

6

15 ()

」 , 「

」 33

1 4

7 1

59 (「

」 33

5 10

59 ,

70 50 , " ") 226 1 150
 , 226 1 100 150
 . < [2011.1.10](#) >
 2 12 .

「 가 」 47 3 1
 2 가 .

[[2008.12.31](#)]

16 () .
 . 15 1 .
 1 8 , 15 2 226 1
 50 .
 15 5 6 .

[[2008.12.31](#)]

17 () .
 15 1 .
 1 15 2 30 1 150 .
 15 5 6 .

[[2008.12.31](#)]

17 2() 13 9 ()
 , 7.8) , . .
 () ,
 . ()
) . < [2009.3.31, 2011.1.10](#) >
 1 , .

[[2008.12.31](#)]

6 2

18 () 13 . , , , , 4
7 1 17 2 1

. < 2010.7.21 >

[2008.12.31]

18 2 <2011.1.10 >

18 3(가) (" ")

가 . , 7 1

가 60 15

[2008.12.31]

18 4 <2011.1.10 >

18 5(가) 1 , (「 」 17 2
.) , 12 「 가

」 16 5 17 가 . , () , 18

가 12 31 () () , . ,

. < 2011.1.10 >

가 = 12 31 () 86 (「 」 31
100) × 1/30 × 가 (20)

가 가 .

[2008.12.31]

18 6() 15

. , . . . 7
1 . < 2010.7.21 >

[2008.12.31]

18 7() . 가 . 가

「 」 19 , 20 2 . 3 , 21 1 . 2 ,
22 , 23 2 . 3 25 . " " " . 가 . 가

" . < 2011.1.10 >

[2008.12.31]

7 < 2008.12.31 >

19 ()

11 [14 3 , 11 3 4)(
3) 7)(「 」 20 2
)] .< 2010.1.7 >

11 (, 14 3
)

.< 2010.1.7, 2010.7.26, 2010.10.18 >

1. 11 2 가 () 5) 9)

2. 11 [1 11)() 3
7)(6
)] 3 3)(
)

3. 11 3 7)(6
) 1

4. 11 3 가 ()
1 ()

5. 11 3 10)(
) 1 ()

6. <2010.1.7 >

7. 11 , 3 4)(3)
7)(「 」 20 2)

8. 11 3 ()

9. 11 3 ()

3 11))()

10. 11 3 () 3 8)[15
(16 21)]

1

()

< 2011.1.10 >

· · ()
· · · 18 18 6
, 4
, · · · 3
1 , (30)
· · (11 1 2 가
1 3) · 가
, · ·
, 11 2 가 () · () [(가 2) 7)
가)] , 15 가 (ㄱ
」 2)
11 3 8)[15 (16 21
)] .< 2009.3.31, 2010.1.7,

2010.7.26 >

가 · 가 · 가 · 가
, 가
· () .<

2011.1.10 >

「 가 」 73 3 1 3 4
가
(,)
, 가
) ·
· · 11 1 3 ()
) ,

13 14 .< 2010.1.7 >

「 」 33 · (ㄱ
가 , · 가
」 36 2 1) · 가

.< 2011.1.10 >

가

[2008.12.31]

20 () 「 」 7 1

가

[2008.12.31]

21 (. .) 「 가

」 74 4 , 74 2 74 3 (1
) 「 」 22 1 (

[2008.12.31]

22 () 「 」
2 4 ,

, 「 」 57 3 1 , 「
」 7 4 1 , 「 」 9 5 1 , 「 」 7 4 1 「
」 30 2 2

. < 2011.1.10 >

1

[2008.12.31]

22 2() 「 」 2 5
2 6 6 2 10 가 ,
11 , 15 , 18 18 6

1

226 1 150 , 226 1 100 150

1 2

[2010.9.10]

23 () 「 」 74 1
 7 2, 12 17 , 17 2, 18 , 18 5
 「 . 」 22
 . , .
 「 」 74 4

. < 2011.1.10 >

1 . , .

[2008.12.31]

< 22618 ,2011. 1.10 >

1 () , 2011 1 1 .
 2 () 11 3
 . ,
 .
 3 () 15 2
 70 226 1 150
 , 226 1 100 150
 .
 18 2
 . , 18 .

200,000

, , 140,000

, , 130,000

, , 120,000

70,000

:

18 4 (7 1)
가 가 16.7

18 5 2 1 가
12 31 () ()
)

가 = 12 31 () 100 × 1/30 × 가 (20)

[별표 1] 삭제 <1988.12.31>

[별표 2의2] <개정 2009.4.30>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 관련)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일반직공무원	4급(과장급 제외) 이하
외무공무원	6등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과장급 제외) 이하
경찰공무원	치안정감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정감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급 과장상당 직위 이하
기능직·고용직공무원	전체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같은 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한정한다)
군인	소장 이하(「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하사 제외)
군무원	1급 이하
국가정보원 직원	1급 이하 및 전문관
경호공무원	1급 이하

[별표 2] <개정 2008.12.31>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7조 관련)

1.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 급 액	근무연수	지 급 액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월 지 급 액			비 고
	전 공무원 (군인·고용직공무원 제외)	군 인 (중사 이상)	고용직공무원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60,000원	(추가 가산금)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 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 다. 다만, 고용직 공무원의 경우에 는 근무연수가 25 년 이상인 사람에 게만 월 20,000원 을 가산하여 지급 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80,000원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60,000원	45,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0,000원	4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원		
5년 미만		30,000원		
		하사 15,000원		

비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2의3] <개정 2009.4.30>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7조의2 관련)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4 적용대상 공무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20호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및 별표 6 적용대상 공무원	연구관·지도관·국가정보원 전문관				연구사·지도사							
	15호봉				16호봉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적용대상 공무원	기능1급부터 기능3급까지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기능3급 20호봉	기능5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기능9급 10호봉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 및 별표 9의2 적 용대상 공무원	별표 9 적용자				별표 9의2 적용자							
	10호봉				10호봉							
5.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적용대상 공 무원	치안경감· 소방정감	치안감· 소방감	경무 관·소 방 준감	총경· 소방정	경정· 소방령	경감· 소방경	경위· 소방위	경사· 소방장	경장· 소방교	순경· 소방사		
	20호봉	20호봉	20호 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6.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및 별표 12 적용대상 공무원	1급 상 당 직위에 보 직된 장학 관	2급 상 당 직위에 보 직된 장학 관	3급상당의 국장 급 또는 기관장 의 직위에 보직 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교장, 3급 과장상 당 또는 4급 과장상 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 관		교감, 직위 가 없는 장학 관 및 교육연 구관		교사,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공무원보 수규정」 별표 3 1급 20호봉	「공무원보 수규정」 별표 3 2급 20호봉	「공무원보 수규정」 별표 3 3급 20호봉		35호봉 (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7호봉)		30호봉 (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3호봉)		26호봉			
7.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적용대상 공 무원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3호봉	12호봉	12호봉	12호봉	9 호봉	5 호봉	중위 2호봉	20 호봉	12 호봉	12 호봉	5 호봉	2 호봉

비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 월봉급액을 말한다.

[별표 3] 삭제 <2001.1.4>

[별표 2의4] <개정 2008.12.31>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 관련)

지급등급		지급액
등급	지급인원	
S등급	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기준액의 1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평가 결과 상위 5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기준액의 9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	그 밖의 사람	지급하지 않음

비고

1. 소속 장관은 지급인원을 10퍼센트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4] <개정 2009.3.31>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2,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9조 관련)

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3/5	수당액의 1/5	수당액의 20퍼센트	수당액의 30퍼센트	수당액의 50퍼센트

비고: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다시 대우공무원이 될 때까지 대우공무원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5] <개정 2008.12.31>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10조 관련)

(달러: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

적용범위	부양가족	월 지급액	비고
1. 국가공무원 (재외공무원은 제외한다)	배우자	40,000원	(가산금) 부양가족 중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2. 재외공무원	배우자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1. 가족수당 지급대상의 인정은 관할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장관이 한다. 2.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 배우자와 함께 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 표 제1호란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가 전쟁 또는 내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표 제2호란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자녀 1명당	60달러	

학비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3. 위 표 제1호의 지급액란 중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한다.

[별표 6의2] <개정 2008.12.31>

주택수당 지급 구분표

적용 범위	월 지급액	비 고
1. 군 인	80,000원	
2. 재외공무원	공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1. 재외공관으로 부임할 때에는 2개월분의 주택수당을 따로 지급한다. 2.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주택수당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

적용범위	학교	지급액
1. 국가공무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로 한정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권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사립의 학교로 한정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권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비 납입영수증 또는 학습비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습비 권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재외공무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권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비고

1. 재외공무원의 경우에 국내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란을 적용하고, 국외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위 표 제2호란을 적용한다.
2. 위 표 제2호란의 학교는 재외공무원 근무지의 학교(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는 제외한다)와 근무지에 교육시설이 없거나 교육시설·교육수준 등이 현저히 미비한 국가에 주재하는 재외공무원이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자녀를 인근 국가의 학교에 취학시킨 경우 그 인근 국가의 학교를 말한다. 다만, 주국제연합 대한민국 대표부 소속 재외공무원 중 직무상 뉴욕시 맨하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녀가 그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과 주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하갓나 출장소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괌도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및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퀘벡주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표 제2호란을 적용하며, 주영국대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런던시에 있는 사립의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평균 미화 600달러의 범위에서

[별표 7] <개정 2011.1.10>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제12조 관련)

(월 지급액, 달러는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

적용대상		급지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군인·군무원,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제외)			60,000원	50,000원	40,000원	30,000원
2. 재외공무원	1·2·3급,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 14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소장·준장·대령·중령		2,500달러	1,500달러	800달러	
	4·5·6·7급, 8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소령·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300달러	1,400달러	720달러	
비고: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근무 여건이 고도로 열악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국가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가지역 지급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국인·국무원·전투경찰순경	중령 이하의 장교, 준위, 원사·상사·중사, 3급부터 7급까지의 군무원		갑지역·을지역: 60,000원 (가산금: 비무장지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30,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20,000원)			
	하사, 군무원 8·9급, 기능군무원		갑지역·을지역: 55,000원 (가산금: 비무장지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20,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10,000원)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 전투경찰순경		갑지역: 15,000원 을지역: 12,000원 (가산금: 비무장지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 15,000원,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및 해안초소 근무자 5,000원)			
	비고: 1. 갑지역 대상자는 비무장지대, 울릉도·독도 및 그 해상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서해 5개 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및 우도를 말한다) 및 접적해역에서 해상작전을 위하여 상주 근무하는 사람이며, 을지역 대상자는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서 상주 근무하는 사람, 해발 800미터 이상 고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산금은 갑지역 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서해 5개 도서 및 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 도서(불음도, 주문도, 서검도, 말도를 말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을지역 대상자 중 비무장지대와 접한 초소 또는 대간첩작전 및 해상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안초소에 상주근무하는 사람에게 각각 지급한다.					
4.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되, 지급액은 위 제2호란의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별표 7의2]

특수지군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

1. 벽지지역

등급 구분 요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해당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 가지역 39점 이상
나. 해당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 및 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다. 해당 기관과 나목의 역 또는 시외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대중교통 운행 횟수(시내버스 등의 상행·하행 운행 횟수의 합)	17회 이상 20회 미만	13회 이상 16회 이하	9회 이상 12회 이하	5회 이상 8회 이하	4회 이하	· 다지역 23점 이상 30점 이하
라. 해당 동 또는 리의 도로면적비율	1.5% 이상 2% 미만	1.0% 이상 1.5% 미만	0.5% 이상 1% 미만	0.5% 미만		
마. 해당 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비율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바.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원·의원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사. 해당 기관으로부터 일용품(잡화·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소규모 가게·상점 포함)까지의 거리	1km 이상 2km 미만	2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6km 미만	6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미용시설 또는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자.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차. 해당 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	2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명 이상 20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50명 미만		
카. 해당 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타. 해당 기관의 직원 수	5명 이상 10명 이하	3명 이상 4명 이하	2명	1명		
파. 해당 기관으로부터 8km 이내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비고

1. 탄광지역(「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최소한 라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있는 기관은 같은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2. 도서지역

등급 구분 요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해당 도서의 선착장으로부터 가장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 가지역 :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시간		2시간 미만	3시간 미만	4시간 미만		31점 이상
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선착장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 나지역 : 23점 이상 30 점 이하
다. 해당 도서의 선착장과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 사이의 1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입항·출항 횟수의 합)	1일 8회 이상 15회 이하	1일 4회 이상 7회 이하	1일 2회 이상 3회 이하	1일 1회	1일 1회 미만	· 다지역 : 15점 이상 22 점 이하
라. 해당 도서에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보건소가 있는 경우	의원 또는 보건지소 (진료소 포함)가 있는 경우	약국만 있는 경우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		· 라지역 : 14점 이하
마. 해당 도서에 전기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육지로부터 선로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력(自力)에 의한 자가발전시설 을 이용하는 경우	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바. 해당 도서의 주된 식수 확보방법	광역상수도 사용	간이상수도 사용	우물 사용	상시 급수 지원		
사. 해당 도서 내에 슈퍼마켓, 이·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금융기관이 있는지의 여부	5종류 중 4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3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2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1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전부 없는 경우	
아. 해당 도서의 상주 인구수	2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명 이상 20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50명 미만		
자. 해당 도서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차. 해당 기관의 직원수	5명 이상 10명 이하	3명 이상 4명 이하	2명	1명		
카. 해당 도서에 학교가 있는지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및 연륙교(連陸橋), 연도교(連島橋) 등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도서지역은 벽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있는 기관은 같은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접적지역

가 지역	비무장지대
나 지역	군사분계선에서 8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2점 이상인 경우

다 지 역	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2점 이상인 경우
라 지 역	군사분계선에서 12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비고

1. 시청 또는 군청이 있는 지역 내의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접적지역이 벽지지역 또는 도서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되,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더라도 접적지역의 특수사정상 그 지역등급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별표 8] <개정 2008.12.31>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 급	월 지급액
갑 종	50,000원
을 종	40,000원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

부문 \ 등급	갑종	을종
1. 해상 부문	<p>가. 세관에서 밀수업자 단속을 위하여 해상 감시선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p> <p>나. 부정어업 단속, 어로 지도 또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 유물 발굴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p> <p>다. 해양관측(기상관측 및 수심조사) 또는 어로시험을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p> <p>라.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로표지의 신설 및 보수와 등대용품의 보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및 무인표지를 설치·점검·정비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p> <p>마. 해양계 대학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p> <p>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p> <p>사.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기상관측장비(부표·등표)를 설치·점검 또는 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항 선박 점검 및 승선자 사열을 위하여 상시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p>	<p>가. 항만 내의 부두 관리, 개항 단속, 오물 제거 및 항만 역무용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p> <p>나.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구조 및 설비 등의 점검에 종사하는 자 및 국토해양부 소속 선박으로서 측량이나 그 밖의 해상작업을 하기 위한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p>
2. 방역·보건 및 수의 부문	<p>가. 방역·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치료·촬영·연구·시험에 종사하는 사람</p> <p>나. 결핵·한센병·감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수술·치료·검사·간호·물리치료·작업치료·이동치료 및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사람</p> <p>다. 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 관계 예방약의 생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p> <p>라.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 세균 및 병독을 취급하는 사람</p>	<p>가. 결핵·한센병·감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나. 감염병 연구·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다.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p>
3. 공업연구 부문	<p>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연구·실험에 종사하는 사람</p>	
4. 농업연구 부문	<p>가. 방사선, 유독성 농약·시약·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나. 가축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세균·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p> <p>나.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 및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에서 각종 농기계 조작 및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가축의 품종 개</p>

	<p>다. 토양 및 식물체 시료 분석 등에 폭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량, 종축 생산, 질병치료 보조, 축사 관리 등 가축(소(小)가축은 제외한다)의 사양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p>5. 소방 부문</p>	<p>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p>	
<p>6. 각 부문</p>	<p>가. 폭발물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과 경찰무기창에서 무기의 정비·수리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p> <p>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시체부검업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p> <p>다.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유물 발굴을 위하여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p> <p>라. 병무청 소속 징병검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업무 및 B형 간염 등 감염병을 검사하는 임상병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p>마.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세관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p>바.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실험 및 제반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p>사. B전압 1,00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p> <p>아.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광산에서 갱내 작업 또는 갱내 조사 시 중량물이나 고속 회전물로 해체 시추(試錐) 또는 탐광작업 중 가스 폭발, 낙반, 갱 붕괴의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단애·절벽·암산·낭떠러지에서 실족·낙사 또는 낙상할 위험이 따르는 지질조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p> <p>자.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공기 급유용 유조차 운전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p> <p>차.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토양 및 식물체 시료 분석 등에 폭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가. 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p> <p>나. 저압 동력이나 그 밖의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기수리공</p> <p>다. 구급차의 운전원</p> <p>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 현상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 촬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마.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직접 인명 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p> <p>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시체부검업무와 시체 내장물, 유독성 화학약품, 유해 금속물, 레이저광선, 인화성 물질 및 폭발물의 감정업무를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 지원·보조업무에 직접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사. 수사외근, 교통외근, 집회·시위 등 현장에서 정보 채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전투경찰대·기동대·방법순찰대·파출소·검문소 소속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기마대 소속 경찰 공무원과 말을 관리하는 기능직공무원</p> <p>아. 우편집중국에서 우편작업기계의 조작·제어 또는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p>자. 해양경찰청 정비창에서 함정의 정비·수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p> <p>차. 마약류 사범 검거 등을 전담하는 마약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철도공안사무소 소속 공무원 중 철도 시설과 열차 내 철도공안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p> <p>카.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p> <p>타.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여 우편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p>

[별표 10] <개정 2008.12.31>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 급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액
갑 종	가. 반기(半期)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나. 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한 사람 다.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기능시험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라.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월봉급액의 70% 이하(하사 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을 종	가.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및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과 항공기를 이용하여 레펠·패스트로프로 훈련한 사람 나. 월 1회 이상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또는 수상을 통한 벽암지 상륙임무를 수행한 사람	월봉급액의 50% 이하(하사 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병 종	가. 3,300볼트 이상의 특수전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나. 탄약을 개수(改修)하는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다. 갑종 또는 을종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기상 변화,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월 1회 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하는 사람 라. 유해의 발굴 및 감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월봉급액의 30% 이하(하사 이하는 장기하사의 최저 호봉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0의2] <개정 2010.1.7>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제13조 관련)

등 별	지 급 대 상	월 지 급 액
갑 종	가. 각 공장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나. 별표 9의 2. 방역·보건 및 수의부문의 갑종란 중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50,000원 이하
을 종	가. 각 공장에서 항공기·함정 또는 주요 지상 장비나 무기의 생산·조작 및 정비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으로서 신체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별표 9의 6. 각 부문의 을종란 중 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화학실험소 등에서 각종 유독성 물질의 성능시험을 하는 사람 및 임상병리사로서 군 의무부대에서 병세균 등의 취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라. 유해발굴 및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0,000원 이하

비고: 군무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의 등별 지급대상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11] <개정 2011.1.10>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1. 기술 분야	기술정보수당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별표 2의 토건·전신·기계·항공·선박·농림·보건위생 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5급·기능5급·5등급·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6급·7급·기능6급·기능7급·3등급·4등급·경감·경위·소방정·소방위: 월 30,000원 이하 8급·기능8급·2등급·경사·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2) 외교통상부 소속의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3)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항에 규정된 해양경과외 경찰공무원 및 합정의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정보통신경과·운전경과의 경찰공무원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사에게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에게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직군 공무원,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서 전자교환기술업무 또는 위성통신기술 운용에 따른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으로서 안전규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5,000원 이하,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 기계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운전장에게는 월 10,000원 이하, 운전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 3급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소방기관에서 유무선통신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시설·전기전자·정보통신·기계금속·병기·탄약·차량·합정·항공·보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용용의 직군 및 정보직군의 기술정보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7) 특수무기의 주정비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중 특히 우수한 실무기술자	월 50,000원 이하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학사 학위를 소지한 군인으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9)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예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기술	월 40,000원 이하

	<p>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의담당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p>															
<p>바. 특수 직무수당</p>	<p>1)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방송·신문·영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p>	<p>5급(5급상당 포함)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35,000원 이하 6급(6급상당 포함) 및 7급(7급상당 포함): 월 25,000원 이하 8급(8급상당 포함) 이하 및 기능직: 월 20,000원 이하</p>														
	<p>2)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서 다음의 특수전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가) 대테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여 조직된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 나) 간첩의 침투봉쇄 및 그 작전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다) 집회·시위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부대(전투경찰대, 방범순찰대, 경찰기동대) 소속의 경찰공무원</p>	<p>가) 해당자</p> <table border="1" data-bbox="651 600 1118 842"> <thead> <tr> <th>계급</th> <th>월 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경정</td> <td>65,000원</td> </tr> <tr> <td>경감</td> <td>60,000원</td> </tr> <tr> <td>경위</td> <td>55,000원</td> </tr> <tr> <td>경사</td> <td>50,000원</td> </tr> <tr> <td>경장</td> <td>45,000원</td> </tr> <tr> <td>순경</td> <td>40,000원</td> </tr> </tbody> </table> <p>나) 해당자: 월 20,000원 이하 다) 해당자: 월 80,000원 이하</p>	계급	월 지급액	경정	65,000원	경감	60,000원	경위	55,000원	경사	50,000원	경장	45,000원	순경	40,000원
계급	월 지급액															
경정	65,000원															
경감	60,000원															
경위	55,000원															
경사	50,000원															
경장	45,000원															
순경	40,000원															
	<p>3)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p>	<p>가) 지급액: 월 3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p>														
	<p>4) 법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p>	<p>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월 40,000원 이하 3급 및 4급: 월 33,000원 이하 5급: 월 2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10,000원 이하</p>														
	<p>5) 계호 및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나)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포함)·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보호관찰소에서 계호업무 또는 보호·관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경비교도는 제외한다) 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군인교도소에서 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군인(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및 군무원 라)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보호</p>	<p>월 170,000원 이하 (가산금) 한센병·결핵 환자인 수용자와 정신질환자인 피치료감호자의 교도·의료·검사 또는 감호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p>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p> <p>6) 국제공항 및 출입국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p> <p>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농림수산물식품부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보건복지부의 국립검역소,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관제소, 지식경제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경찰청, 관세청 및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 국제공항(외국인이 출입하는 군용 비행장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일반직·별정직(전산업무담당 제외) 및 기능직공무원</p> <p>나) 출입국장에서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한 여객 및 적재화물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입 장소에서 상시 통관·감시·검역 등 출입국(경)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p>	<p>월 50,000원 이하</p>
<p>7)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現業作業)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p>	<p>가)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p> <p>나) 지급방법 지급대상·지급구분·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p>
<p>8)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사서직군무원을 포함한다)</p>	<p>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p>
<p>9)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수사경찰공무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p> <p>가)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와 형사재판의 집행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경찰사무직 및 미약수사직공무원과 감청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하의 별정직공무원</p> <p>나) 감식업무에 종사하거나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을 전담하여 조</p>	<p>·지급액 가)의 해당자: 월 70,000원 이하 나)의 해당자: 월 40,000원 이하</p>

		<p>사·처리하는 수사경찰공무원</p> <p>10)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p> <p>11) 소방방재청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과 같은 화재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119지역대 및 중앙119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나)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p> <p>12) 남북 교류협력협 의사무소에서 정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p> <p>13)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경호공무원 정원을 대체하여 운영하는 일반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p> <p>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체부검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p>	<p>5년 이상: 월 50,000원 이하 5년 미만: 월 3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특허청의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p> <p>·지급액 가)의 해당자 : 월 80,000원 이하 나)의 해당자 : 월 40,000원 이하</p> <p>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월 700,000원 이하 4급(4급 상당 포함): 월 600,000원 이하 5급(5급 상당 포함): 월 500,000원 이하 6·7급(6·7급 상당 포함): 월 400,000원 이하 8·9급(8·9급 상당 포함): 월 300,000원 이하 기능직: 월 200,000원 이하</p> <p>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3급 상당 이상 포함): 월 500,000원 이하 4급(4급 상당 포함): 월 400,000원 이하 5급(5급 상당 포함): 월 300,000원 이하 6급 이하(6급 상당 이하 포함): 월 200,000원 이하</p> <p>월 300,000원 이하</p>
<p>4 제외 직 분 야</p>	<p>가 제외근 무수당</p>	<p>제외공관에 근무하는 제외공무원</p>	<p>○ 지급액 가) 달러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p>

구분 계급· 직무등급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14등급	3,459	3,672	3,886	4,088	4,271	4,483	4,655	4,826	4,998	5,210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 등급, 소장·준장	2,957	3,139	3,322	3,469	3,651	3,833	3,979	4,126	4,272	4,454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형·중형	2,407	2,555	2,705	2,824	2,972	3,120	3,239	3,389	3,478	3,626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2,088	2,217	2,346	2,450	2,578	2,706	2,810	2,913	3,017	3,145
5급, 5등급, 대위, 국가경보원 전문관	1,913	2,030	2,149	2,244	2,362	2,479	2,574	2,669	2,764	2,881
6급, 4등급	1,737	1,844	1,952	2,038	2,145	2,252	2,338	2,424	2,510	2,617
7급, 3등급	1,594	1,692	1,791	1,870	1,968	2,066	2,145	2,224	2,303	2,401

나) 현지화 지급국

(월 지급액)

구분 계급· 직무등급	싱가포르, 브루나이 (싱가포르달러)	일본, 요코하마 (엔)	고메 나고야 나기타 시모노 칸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엔)	영국 (파운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유로)
	14등급	6,872	687,406	582,688	3,097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5,875	583,332	498,105	2,647	3,178
2·3급, 고위공무원단 나 등급, 9등급부터 11등급 까지, 대형·중형	4,782	441,216	405,466	2,155	2,583
4급, 6등급부터 8등급 까지, 소령	4,149	383,490	351,761	1,869	2,248
5급, 5등급, 대위, 국가경 보원 전문관	3,800	349,756	322,224	1,712	2,063
6급, 4등급	3,452	319,161	292,687	1,555	1,874
7급, 3등급	3,167	291,050	268,520	1,427	1,711

계급 - 직무등급	구분	스페인, 라스팔마스, 그리스,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유로)	터키, 안도라 (유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프랑크푸르트, 교황청,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오이시디, 네덜란드 (유로)	권란드 (유로)	덴마크 (크로네)
14등급		4,232	4,318	4,403	4,572	35,253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611	3,682	3,753	3,898	30,051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2,933	2,992	3,050	3,167	24,409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2,551	2,602	2,663	2,753	21,292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328	2,375	2,421	2,513	19,366
6급, 4등급		2,127	2,169	2,211	2,294	17,677
7급, 3등급		1,939	1,977	2,015	2,090	16,115

계급 - 직무등급	구분	노르웨이 (크로네)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제네바 (프랑)	캐나다, 밴쿠버, 몬트리올, 토톤토 (달러)	호주, 시드니 (달러)	뉴질랜드, 오클랜드 (달러)
14등급		42,523	43,513	7,898	5,703	6,077	8,264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36,248	37,092	6,733	4,866	5,183	7,050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29,428	30,135	5,466	3,955	4,213	5,729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25,590	26,195	4,753	3,440	3,666	4,986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23,330	23,913	4,333	3,140	3,347	4,552
6급, 4등급		21,289	21,827	3,954	2,866	3,056	4,156
7급, 3등급		19,419	19,892	3,607	2,616	2,788	3,792

계급 - 직무등급	구분	대만 (달러)	시안, 쑹저우, 선양, 쑹두, 칭다오 (런민비)	중국, 상하이 (런민비)
14등급		163,275	29,611	30,922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139,181	25,314	26,434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112,997	20,609	21,519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98,258	17,877	18,669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89,682	16,375	17,099
6급, 4등급		81,742	14,874	15,530
7급, 3등급		74,564	13,647	14,249

비고: 위 가) 및 나) 표에 규정되지 않은 계급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급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 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가산금 및 환율변정에 따른 조정)

가) 재외공무원 중 특히 권장할 필요가 있는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구분	등급		
	1급	2급	3급
제1종 특수외국어(불어·독어)	월 300달러 이하	월 250달러 이하	월 200달러 이하
제2종 특수외국어(러시아어·아랍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서반아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힌두(인도)어·베트남어·터키어·미얀마어·태국어·이란어·스웨덴어·타갈로그어·그리스어·네덜란드어·덴마크어 및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어)	월 900달러 이하	월 600달러 이하	월 450달러 이하
급별 기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특수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초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

비고: 이 가산금은 해당 특수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만 지급하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나) 재외근무수당을 미합중국 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합중국 화폐 가치가 절하(절상)되어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증액)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가산(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계급·직무등급	감액(중액)률									
	2% 이상 4% 미만	4% 이상 6% 미만	6% 이상 8% 미만	8% 이상 10% 미만	10% 이상 12% 미만	12% 이상 14% 미만	14% 이상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14등급	64	128	192	256	321	385	449	513	577	641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12·13등급, 소장·준장	55	109	164	218	272	327	382	436	490	545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9등급부터 11등급까지, 대령·중령	44	88	132	176	220	264	308	352	396	440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소령	38	76	114	152	190	229	267	305	343	381
5급, 5등급, 대위, 국가정보원 전문관	35	69	104	139	173	208	242	277	312	346
6급, 4등급	31	63	94	126	157	189	220	252	283	315
7급, 3등급	29	57	86	114	143	172	200	229	257	286

(2) 지급방법

(가) 감액(중액)률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현재로 다음 공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계산하여 해당 월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text{○ 감액(중액)률(\%)} = \frac{\text{나-가}}{\text{가}} \times 100$$

“가”는 액(중액)률 산출일 직전 분기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분기평균가치를, “나”는 산출일이 속한 해의 전 해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합중국 화폐 1달러의 평균가치를 말한다. 다만, 중액률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된 값이 음의 부호일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나) 주재국의 외환통제조치 등으로 재외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이 사실상 감액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액률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감액(중액)률의 변동으로 재외근무수당을 변경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그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감액(중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10) 7)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기상 예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과 청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청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	월 30,000원 이하
		11)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가) 지급액 ·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나) 지급방법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2 교육 및 연구 분야	가. 연구 업무수당	1) 통일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5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월 25,000원 이하 6급 상당 및 7급 상당 월 15,000원 이하 8급 상당 이하: 월 10,000원 이하
		2)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다만, 교육과학기술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과학기술연수원·국립국제교육원, 학술원사무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사람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제외한다.	가) 지급액 ○ 장학관·교육연구관 · 5년 이상 월 22,000원 · 5년 미만 월 37,000원 ○ 장학사·교육연구사 · 5년 이상 월 17,000원 · 5년 미만 월 32,000원 나) 지급방법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4급상당 이상의 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22,000원을 지급한다.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장학관·교육연구관 중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20,000원을 지급한다. (비고) 1.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2. 지급대상란의 2)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3) 연구직공무원	월 80,000원 이하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감정 및 연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	5급 상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월 50,000원 6급 상당 및 7급 상당 월 35,000원 8급 상당 이하: 월 30,000원

<p>5) 각급 공무원 훈련기관(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군인 및 교육공무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외교안보연구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는 제외한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소년원·치료감호소 또는 교도소 등에서 직업훈련을 담당하거나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재활원에서 심신장애인의 직업훈련, 특수교육 및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전임강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농기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요원</p>	<p>가) 지급액 5급(5급상당 포함)·경정·소방령 이상 또는 교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월 60,000원 6급(6급상당 포함)·경감·소방경 이하: 월 40,000원</p> <p>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해당 교육훈련 실시기관의 소속 장관이 정한다.</p> <p>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비고) 다만 지급대상란의 5)의 해당자가 9)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p>										
<p>6) 국방대학교·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 중 장기복무장교와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p>	<p>국방대학교·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 육군3사관학교의 부교수 이상: 월 40,000원 육군3사관학교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월 35,000원</p>										
<p>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일반학 교관인 군인</p>	<p>월 20,000원</p>										
<p>8)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학 전문교육기관(신병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교관인 군인 및 군무원</p>	<p>영관 및 4급 이상: 월 30,000원 위관 및 5급·6급: 월 20,000원 부사관 및 7급 이하: 월 15,000원</p>										
<p>9)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외교안보연구원·경찰대학·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월지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원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10,000원</td> </tr> <tr> <td>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td> <td style="text-align: right;">110,000원</td> </tr> <tr> <td>부장</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0원</td> </tr> <tr> <td>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사</td> <td style="text-align: right;">80,000원</td> </tr> </tbody> </table> <p>(비고)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의 월 지급액을 적용한다.</p>	구분	월지금액	원장	110,000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110,000원	부장	100,000원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사	80,000원
구분	월지금액										
원장	110,000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110,000원										
부장	100,000원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교사	80,000원										

나. 교원 등에 대 한 보전 수당	1) 국공립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에 근무하는 교원(특수학교에 설 치된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인 특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포함 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월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1)의 해당자 · 5년 이상</td> <td>8,000원</td> </tr> <tr> <td>· 5년 미만</td> <td>23,000원</td> </tr> <tr> <td>2)의 가)해당자 · 5년 미만</td> <td>18,000원</td> </tr> <tr> <td>2)의 나)해당자</td> <td>15,000원</td> </tr> <tr> <td>3)의 해당자</td> <td>20,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월지급액	1)의 해당자 · 5년 이상	8,000원	· 5년 미만	23,000원	2)의 가)해당자 · 5년 미만	18,000원	2)의 나)해당자	15,000원	3)의 해당자	20,000원
	구분	월지급액												
	1)의 해당자 · 5년 이상	8,000원												
	· 5년 미만	23,000원												
	2)의 가)해당자 · 5년 미만	18,000원												
2)의 나)해당자	15,000원													
3)의 해당자	20,000원													
2) 국공립의 중학교·고등학교에 근무 하는 교원(중학교·고등학교에 존하는 각종학교, 특수학교에 설치된 중학교 과정 또는 고 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와 중 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 인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을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 2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 나) 가)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 서 5년 미만 근무한 사람	<p>(가산금) 지급대상란 1)의 경우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특수학교의 유치원 과 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과 유치원 과정 또는 초등학교 과정인 특수학 교를 포함한다)의 원장 또는 교장에게는 월 67,000원, 원감 또는 교감에게는 월 57,000원, 보직교사에게는 월 52,000원, 교사에게 는 월 47,000원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p> <p>(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 현계를 기준으로 「공무원보 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 다.</p>													
3) 국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사범 학교·교육대학·한국방송통신 대학 및 산업대학, 대학 및 전 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중앙공무원교육원·통일교육원 · 외교안보연구원·경찰대학· 국방대학교 및 그 밖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5년 미만 근무자. 다만, 범 령에 따른 직(職)에 겸직(兼職) 된 사람은 제외한다.														
4) 특3호봉과 대학원장, 대학교(한 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 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 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 장, 한국고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 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월 60,000원													
5) 교장, 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 관	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 원단 직위) : 월 70,000원 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상당 직위) : 월 10,000원													
다. 교직 수당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 사 및 교육연구사와 고등학교 이하 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다만, 다음 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 하는 교원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	월 250,000원												

<p>되, 그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각각의 해당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p>																
<p>(가산금 지급대상) 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p>	<p>(가산금) 월 50,000원</p>															
<p>2)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p>	<p>월 70,000원</p>															
<p>3) 고등학교 이하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다음의 해당자 가) 국공립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나)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다) 국립의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라)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마)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동학교 통학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하는 사람(운전만을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가) 및 나)의 해당자: 월 70,000원 다) 및 라)의 해당자: 월 50,000원 마)의 해당자: 월 30,000원 (비고)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p>															
<p>4)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p>	<p>월 110,000원</p>															
<p>5)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다음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교원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른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 초등학교 정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기술, 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사진, 디자인·공예, 정보·컴퓨터,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오염, 인</p>	<table border="1" data-bbox="651 1361 1264 1594"> <thead> <tr> <th>호봉별</th> <th>월 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31 ~ 40</td> <td>50,000원</td> </tr> <tr> <td>22 ~ 30</td> <td>45,000원</td> </tr> <tr> <td>14 ~ 21</td> <td>40,000원</td> </tr> <tr> <td>9 ~ 13</td> <td>35,000원</td> </tr> <tr> <td>5 ~ 8</td> <td>30,000원</td> </tr> <tr> <td>1 ~ 4</td> <td>25,000원</td> </tr> </tbody> </table> <p>다만, 기계공업고등학교(서울공업고등학교·부산공업고등학교 및 성동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장·교감과 기계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와,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교감과 전기·전자·통신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호봉별	월 지급액	31 ~ 40	50,000원	22 ~ 30	45,000원	14 ~ 21	40,000원	9 ~ 13	35,000원	5 ~ 8	30,000원	1 ~ 4	25,000원	
호봉별	월 지급액															
31 ~ 40	50,000원															
22 ~ 30	45,000원															
14 ~ 21	40,000원															
9 ~ 13	35,000원															
5 ~ 8	30,000원															
1 ~ 4	25,000원															

		새, 수산·해양, 항해·기관, 냉동, 의상 나)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른 실기교사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농업계·공업계 및 수산·해운계의 각 표시과목																																																			
3. 특수 업 무 분야	가. 선발 및 합정 등 근무 수당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7) 병설 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	월 30,000원 겸임교장: 월 100,000원 겸임교감: 월 50,000원																																																		
		1)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관세청·문화체육관광·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한강순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월 10일 이상 선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2) 합정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기능직공무원과 어업지도선에 월 10일 이상 승선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가) 지급액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조교수 이상: 월 39,000원 이하 6급·기능6급 이상·전임장사 및 경감: 월 32,000원 이하 7급·기능7급·조교 및 경위: 월 25,000원 이하 8급·기능8급 및 경사 이하: 월 20,000원 이하 (가산금) 관세청 소속 세관감시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 1개월 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간의 항해일수를 모두 합하여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가) 경찰공무원 <table border="1" data-bbox="651 1003 1278 1301"> <thead> <tr> <th rowspan="2">계급</th> <th colspan="2">월 지급액</th> </tr> <tr> <th>경비합정근무자</th> <th>특수합정근무자</th> </tr> </thead> <tbody> <tr> <td>경정</td> <td>172,000원</td> <td>123,000원</td> </tr> <tr> <td>경감</td> <td>141,000원</td> <td>101,000원</td> </tr> <tr> <td>경위</td> <td>133,000원</td> <td>95,100원</td> </tr> <tr> <td>경사</td> <td>122,000원</td> <td>87,800원</td> </tr> <tr> <td>경장</td> <td>112,000원</td> <td>80,500원</td> </tr> <tr> <td>순경</td> <td>92,000원</td> <td>65,800원</td> </tr> <tr> <td>전투경찰순경</td> <td>20,000원</td> <td>20,000원</td> </tr> </tbody> </table> 나) 소방공무원 <table border="1" data-bbox="651 1361 1278 1599"> <thead> <tr> <th>계급</th> <th>월 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소방령 이상</td> <td>65,000원</td> </tr> <tr> <td>소방정</td> <td>50,000원</td> </tr> <tr> <td>소방위</td> <td>37,000원</td> </tr> <tr> <td>소방장</td> <td>34,000원</td> </tr> <tr> <td>소방교</td> <td>30,000원</td> </tr> <tr> <td>소방사</td> <td>21,000원</td> </tr> </tbody> </table> 다) 해양경찰청 소속 기능직공무원 및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 <table border="1" data-bbox="651 1664 1278 1839"> <thead> <tr> <th>계급</th> <th>월 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5급 이상</td> <td>39,000원 이하</td> </tr> <tr> <td>6급, 기능6급</td> <td>32,000원 이하</td> </tr> <tr> <td>7급, 기능7급</td> <td>25,000원 이하</td> </tr> <tr> <td>8급, 기능8급 이하</td> <td>20,000원 이하</td> </tr> </tbody> </table>	계급	월 지급액		경비합정근무자	특수합정근무자	경정	172,000원	123,000원	경감	141,000원	101,000원	경위	133,000원	95,100원	경사	122,000원	87,800원	경장	112,000원	80,500원	순경	92,000원	65,800원	전투경찰순경	20,000원	20,000원	계급	월 지급액	소방령 이상	65,000원	소방정	50,000원	소방위	37,000원	소방장	34,000원	소방교	30,000원	소방사	21,000원	계급	월 지급액	5급 이상	39,000원 이하	6급, 기능6급	32,000원 이하	7급, 기능7급	25,000원 이하	8급, 기능8급 이하	20,000원 이하
계급	월 지급액																																																				
	경비합정근무자	특수합정근무자																																																			
경정	172,000원	123,000원																																																			
경감	141,000원	101,000원																																																			
경위	133,000원	95,100원																																																			
경사	122,000원	87,800원																																																			
경장	112,000원	80,500원																																																			
순경	92,000원	65,800원																																																			
전투경찰순경	20,000원	20,000원																																																			
계급	월 지급액																																																				
소방령 이상	65,000원																																																				
소방정	50,000원																																																				
소방위	37,000원																																																				
소방장	34,000원																																																				
소방교	30,000원																																																				
소방사	21,000원																																																				
계급	월 지급액																																																				
5급 이상	39,000원 이하																																																				
6급, 기능6급	32,000원 이하																																																				
7급, 기능7급	25,000원 이하																																																				
8급, 기능8급 이하	20,000원 이하																																																				

		(가산금) 가) 합정장애에는 해당 합정수당 지급액에 월 2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나) 해양경찰청 소속 합정근무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 및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는 출동일수마다 7,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3) 합정승무원으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출동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1) 하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 · 특수합승무원 : 월봉금액의 150% 이하 · 그 밖의 합정승무원 : 월봉금액의 80% 이하 (2) 병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1) 하사에 대해서는 그 최저 호봉의 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4) 수륙양용 케도차량에서 근무하는 군인	가) 지급액 (1) 하사 이상 : 월봉금액의 55% 이하 (2) 병 :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나 항공수당	1)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정비사인 경찰공무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조종사</th> <th>정비사·견탐사</th> </tr> </thead> <tbody> <tr> <td>경정 이상</td> <td>631,700원</td> <td>313,400원</td> </tr> <tr> <td>경감</td> <td>505,300원</td> <td>279,100원</td> </tr> <tr> <td>경위</td> <td>404,200원</td> <td>217,800원</td> </tr> <tr> <td>경사</td> <td>323,400원</td> <td>196,000원</td> </tr> <tr> <td>경장</td> <td>258,600원</td> <td>184,200원</td> </tr> <tr> <td>순경</td> <td>205,900원</td> <td>174,2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조종사	정비사·견탐사	경정 이상	631,700원	313,400원	경감	505,300원	279,100원	경위	404,200원	217,800원	경사	323,400원	196,000원	경장	258,600원	184,200원	순경	205,900원	174,200원
구분	조종사	정비사·견탐사																					
경정 이상	631,700원	313,400원																					
경감	505,300원	279,100원																					
경위	404,200원	217,800원																					
경사	323,400원	196,000원																					
경장	258,600원	184,200원																					
순경	205,900원	174,200원																					
	2) 조종사, 조종교관, 비행전술장교 및 해상초계기 조종사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 월봉금액의 150%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3)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	가) 지급액 : 월봉금액의 120% 이하 나) 지급방법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4)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해양오염 감시 및 방제 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 근무자로서 1개월에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및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월 50,000원 6·7급 : 월 40,000원 8·9급 : 월 30,000원 기능직 : 월 20,000원 (가산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무원 중 헬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작업을 하는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산림청의 산림항공본부에서 항공기를 직접 조종하는 일반직공무원	다.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240,000원										
다. 외무공무원·군인 등의 장려수당	<p>1)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정밀고가장비 등 특수장비 조작·운용요원</p> <p>2)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의관 등의 특수장교</p> <p>3)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기술자</p> <p>4)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p> <p>5)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 분야 종사 공무원</p> <p>6) 해당 직무등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외무공무원 중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p> <p>7)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p> <p>8) 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 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p>	<p>가) 지급액</p> <p>1)의 해당자: 월 35,000원 이하</p> <p>2)의 해당자: 월 950,000원 이하</p> <p>3)의 해당자: 월 130,000원 이하</p> <p>4)의 해당자: 월 200,000원 이하</p> <p>5)의 해당자: 월 110,000원 이하</p> <p>6)의 해당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수당에 준하는 금액</p> <p>7)의 해당자: 월 900,000원 이하</p> <p>8)의 해당자: 월 1,000,000원 이하</p> <p>나) 지급방법</p> <p>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p>										
라. 개방형 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p>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 따라 공모 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직위(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및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 대상 직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직위만 해당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국립·공립 대학 간에 인사교류에 따라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p> <p>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또는 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p>	<table border="1" data-bbox="651 1059 1050 1272"> <thead> <tr> <th>계급·직무등급</th> <th>월 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고위공무원단 가니등급, 9등급부터 12등급까지</td> <td>300,000원</td> </tr> <tr> <td>3급, 과장급 9등급, 일반계약직 3호</td> <td>200,000원</td> </tr> <tr> <td>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일반계약직 4호</td> <td>100,000원</td> </tr> <tr> <td>5급, 5등급 이하</td> <td>50,000원</td> </tr> </tbody> </table> <p>(가산금)</p> <p>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국립·공립 대학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게서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p>(비고)</p> <p>1. 지급대상란의 1)의 해당자가 2) 또는 별표 15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난의 규정을 적용한다.</p> <p>2. 위 계급·직무등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p>	계급·직무등급	월 지급액	고위공무원단 가니등급, 9등급부터 12등급까지	300,000원	3급, 과장급 9등급, 일반계약직 3호	200,000원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일반계약직 4호	100,000원	5급, 5등급 이하	50,000원
계급·직무등급	월 지급액											
고위공무원단 가니등급, 9등급부터 12등급까지	300,000원											
3급, 과장급 9등급, 일반계약직 3호	200,000원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일반계약직 4호	100,000원											
5급, 5등급 이하	50,000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근무기간</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월 지급액</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th> <th style="text-align: center;">5급 이하</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년이상2년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년이상3년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년이상5년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7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00원</td> </tr> </table> <p>(가산금) 외국어능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동금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80,000원을, 나동금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4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p>(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p>	근무기간	월 지급액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이하	1년 미만	50,000원	30,000원	1년이상2년미만	70,000원	50,000원	2년이상3년미만	100,000원	80,000원	3년이상5년미만	140,000원	120,000원	5년 이상	170,000원	150,000원										
근무기간	월 지급액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이하																														
1년 미만	50,000원	30,000원																														
1년이상2년미만	70,000원	50,000원																														
2년이상3년미만	100,000원	80,000원																														
3년이상5년미만	140,000원	120,000원																														
5년 이상	170,000원	150,000원																														
<p>마. 의료업무 등의 수당</p>	<p>1) 의무·약무·간호직 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2조 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간호군무원 및 약무직렬 군무원을 포함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월 지급액, 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의무직렬 공무원</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약무직렬공무원</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간호직렬공무원</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지역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가 (군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의</td> <td style="text-align: center;">950,000</td>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70,000</td> <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5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의</td> <td style="text-align: center;">850,000</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나 (다·라 외의 시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의</td> <td style="text-align: center;">85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의</td> <td style="text-align: center;">750,000</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다 (라 외의 도청 소재지인 시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의</td> <td style="text-align: center;">75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의</td> <td style="text-align: center;">650,000</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라 (특별시·광역시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의</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의</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000</td> </tr> </tbody> </table> <p>(가산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경찰병원에서 치안 상황에 의하여 부상당한 전·외경 및 경찰공무원의 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부검·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업무 직접 종사자에게는 월 1,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p> <p>(비고) 광역시외의 읍·면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외 읍·면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지역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p> <p>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군무원을 포함한다) 중 의료기사 월 50,000원</p> <p>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p>	의무직렬 공무원			약무직렬공무원	간호직렬공무원	지역별	지급	금액	가 (군지역)	전문의	950,000	70,000	50,000	일반의	850,000	나 (다·라 외의 시지역)	전문의	850,000	일반의	750,000	다 (라 외의 도청 소재지인 시지역)	전문의	750,000	일반의	650,000	라 (특별시·광역시지역)	전문의	700,000	일반의	600,000
의무직렬 공무원			약무직렬공무원	간호직렬공무원																												
지역별	지급	금액																														
가 (군지역)	전문의	950,000	70,000	50,000																												
	일반의	850,000																														
나 (다·라 외의 시지역)	전문의	850,000																														
	일반의	750,000																														
다 (라 외의 도청 소재지인 시지역)	전문의	750,000																														
	일반의	650,000																														
라 (특별시·광역시지역)	전문의	700,000																														
	일반의	600,000																														

[별표 12] <개정 2009.4.30>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제15조제3항 관련)

지급대상	기준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해당 계급(직무등급) 또는 해당 계급(직무등급) 상당 10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연구관·지도관·국가정보원 전문관: 8호봉 연구사: 10호봉, 지도사 21호봉이상: 12호봉, 지도사 20호봉 이하: 10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25호봉 30호봉이상: 23호봉 20호봉부터 29호봉까지: 21호봉 19호봉이하: 18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대위: 8호봉 중위·소위: 3호봉 준위: 11호봉 원사: 1호봉 상사: 6호봉 중사: 9호봉 하사: 5호봉

[별표 13] <개정 2008.12.31>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표

구분	지급대상
· 일반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 외무공무원	· 6등급
· 연구직공무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 지도직공무원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 헌법연구관 · 헌법연구관보
· 국가정보원 직원	·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 경호공무원	· 4급 이상
· 경찰공무원	· 총경 이상
· 소방공무원	· 소방정 이상
·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라 특1호봉 이상 특4호봉 이하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 · 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 4급상당 이상의 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장

비고: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관리업무수당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14] 삭제 <2011.1.10>

[별표 15] <개정 2011.1.10>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금액
대통령				3,200,000원
국무총리				1,720,000원
감사원장				1,340,000원
장관(급)	대장		총장(특1호봉)	1,240,000원
처장, 본부장				1,150,000원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950,000원
	소장		총장(특2호봉), 부총장	900,000원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	준장	치안정감, 소방정감	전문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750,000원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11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2호)	대령	치안감, 소방감	장학관·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	650,000원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3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헌법연구관보	중령	경무관, 소방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3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아래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500,000원
4급(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	소령	총경,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대위	경정,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	250,000원
	준위			180,000원
6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기능1급부터 기능6급까지, 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	원사	경감·경위, 소방정·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55,000원
7급(상당), 기능7급, 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라급)	상사	경사, 소방장		140,000원
8·9급(상당), 기능8·9급, 1·2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8·9호),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중위, 소위, 중사	경장·순경, 소방교·소방사		105,000원
기능10급, 일반계약직공무원(10호)	하사			95,000원
고용직공무원				70,000원

비고

1.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총장(특1호봉)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2.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이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 공무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5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없다.
3. "헌법연구경력"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원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 시의 초임호봉 획정에 통산된 기간(다만,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은 제외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준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소방총감, 총장(특1호봉·특2호봉)은 제외한다)에게는 월 200,000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7. 별표 11 제4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 제21243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의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및 헌법연구관보	치안경감·치안감·경무관, 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200,000원
4·5급(상당), 연구관·지도관(4·5급 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5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7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기능1급부터 기능7급까지, 3·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라급)	경감·경위·경사, 소방경·소방위·소방장	장학사, 교육연구사	130,000원

8.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